

모든 아이를 위한
평화로운
교육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한

2019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2019. 1.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한

2019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I 추진 근거

- 「헌법」 제31조제4항
- 「교육기본법」 제14조
- 「경기교권보호 헌장」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2019 경기교육기본계획」(2018. 12.)
- 「2019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2019. 1.)

II 추진 배경

-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증가로 교원의 교육권 실추 및 사기 저하
-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 동시 침해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기 사안 대응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필요
- 회복적 생활교육 적용으로 스승존경 제자사랑의 학교문화 구현 필요성
- 찾아가는 학교현장 맞춤형 교권보호 연수 결과 교원의 심신 치유에 대한 현장 요구 증가

III 추진 목적

-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 교권 침해 교원 구제 및 사전 예방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창출
-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 전개를 위한 환경 조성

IV 실태분석 및 추진 방향

1 실태 분석

가. 교권침해 현황(최근 3년간)

□ 2016년~2017년

연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폭행	폭언·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소계	학부모	그외	
2016년	23	290	23	51	55	442	20	3	465
2017년	30	337	20	56	24	467	28	0	495

□ 2018년 상반기 [2018.3.1.~8.30.]

사안 유형	상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유류통	공무 방해	성적 언동	반복부 당간섭	학교장 판단	합계
2018년	40	6	255	5	1	2	1	12	14	8	344

(344건 중, 학생-311건, 학부모-29건, 기타-4건)

※ 2018년 현황,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따라 교육부 통계 기준이 변경됨

나. 교권침해에 대한 처리 결과(학생 선도조치 현황)

유형별	상담 지원 내역							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합계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기타	소계	사과 및 분쟁 조정, 기타	
2016년	55	35	105	170	23	54	442	23	465
2017년	66	25	104	153	24	95	467	28	495
2018년 8월 기준	26	9	48	143	20	65	311	33	344

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내역 및 심리치료비 지원 현황

유형별	상담 지원 내역	심리치료비 지원 현황
2016년	803건	67명
2017년	534건	24명
2018년 8월 기준	562건	77명

라. 실태분석 및 지원현황

-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현황은 2016년도 465건, 2017년도 495건, 2018년도 상반기 344건이 발생하였으며,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욕설(모욕, 명예훼손) 등 언어폭력에 의한 사안발생이 가장 많음.

- 교권침해 사안 관련하여 학생 징계 현황은, 출석정지가 143건으로 가장 많음.
- 교권침해 피해교원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교원의 교원 자존감 회복을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교원행복치유 캠프, 교직원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하고 있음.
- 찾아가는 학교현장 맞춤형 교권보호 연수를 통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2 2019 교권보호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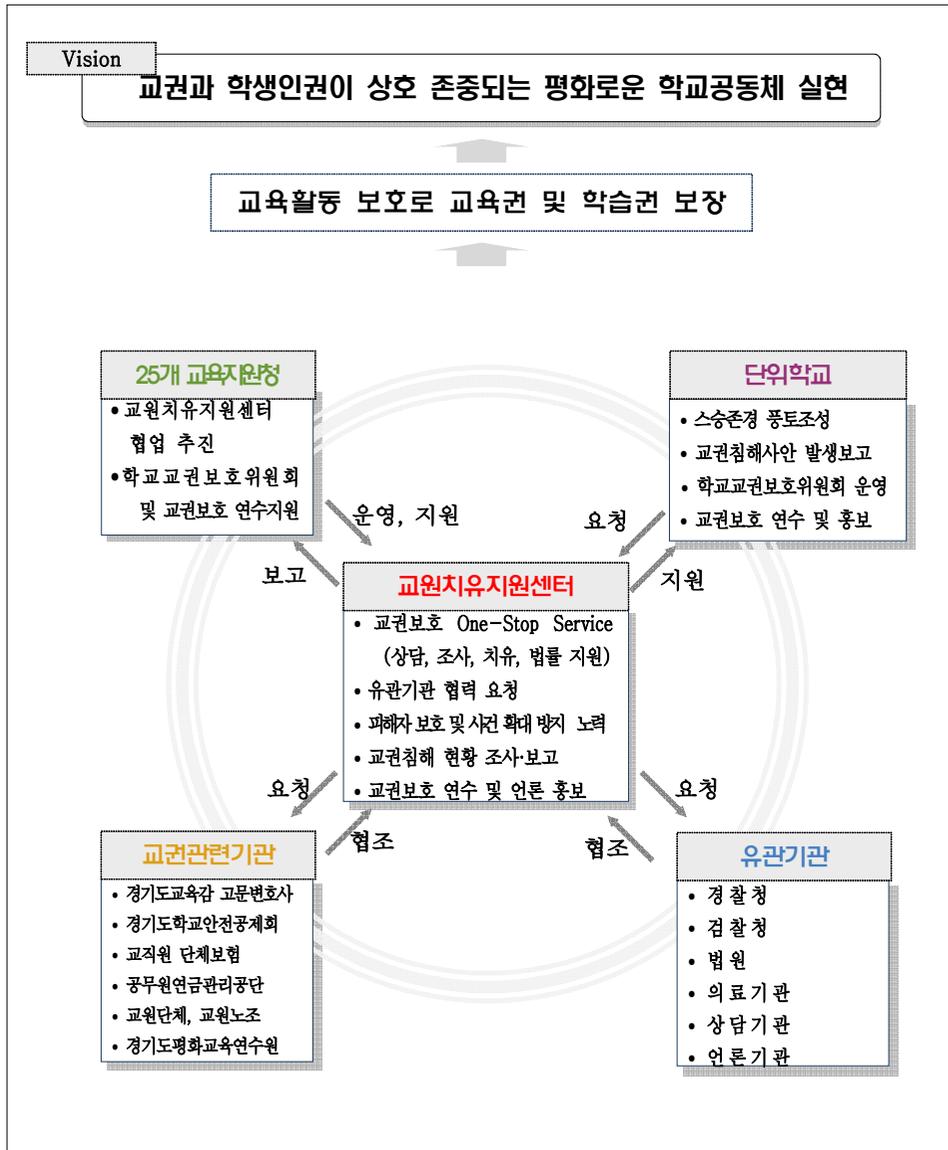
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교원의 의견 수렴 및 문제점

- 근무 시간 외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침해 및 업무 연장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이후, 가해학생과의 수업분리가 어려운 상황이 많아 수업 진행의 어려움 호소
-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갈등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제적인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음
- 교권관련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로 교원의 교육활동 사기 진작에 저해요소가 됨
- 교육활동 침해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담당교원의 전문성 부족

나. 실태분석에 따른 교권보호 추진 방향

- 단위학교 교감, 담당부장교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학부모 대상의 맞춤형 연수를 진행하여 담당교원 및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사후처리보다는 예방활동 지원에 중점
-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강화
-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간극을 좁히고 올바른 개념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
- 학년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총회시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근무시간 외 교사 개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고, 학교대표번호 및 교사 사무실 번호를 안내하여 교사와 소통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교사공동체 안에서 자생적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교권전담변호사 및 상담사를 통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조사, 치료, 법률지원 등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노력

V 추진 체제



VI 추진 내용

1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가. 운영 주관 :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나. 역할 및 기능

-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수립
- 교육활동 침해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시스템(조사/법률자문/상담/치유 지원)
- 교육활동 보호 연수 및 [교권보호매뉴얼] 보급
-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dup.goe.go.kr/eapc/eapcMain/main.do>] 운영(교육활동 보호 관련 온라인상담)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대상 심리치료비 지원 및 교원행복치유캠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기타 교권보호 관련 사항 전담

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조직

직 위(급)	인원(5명)	담당 업무
장학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보호 업무 기획 • 경기도 교권보호위원회 간사
장학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보호 기본계획 수립 • 교권보호 관련사항 전담 및 연수 운영
주무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침해 관련 민원 및 분쟁 조정 • 교권보호팀 예산 업무
변호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침해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 교육법률 관련 연수 지원
상담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운영 • 교권침해 현황 조사

2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지원

가. 25개 교육지원청 단위 연수

- 기간 : 2019년 4월~(상반기 진행)
- 대상 : ① 초·중·고·특수학교 교감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위원
- 일시 및 장소 : 25개 교육지원청 희망 일시 및 지정 장소
- 내용

연번	영역	연수 내용
1	교권과 교권보호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 교육활동 침해 유형, 교권관련 법률 등
2	교권침해 사례 및 대응	학생 및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 및 대응방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방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안내 등 (기타 질의)
3	학생과 교원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교육활동 침해 사안 사례 안내 회복적생활교육 문화 구축 (기타 질의)

- 연수일정

시간	대상	주요 연수 내용
10:00~11:30	교감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사안 처리절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13:00~14:30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위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의 흐름 및 주의할 점

나. 단위학교 대상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 실시

- 기간 : 2019년 7월~2020년 2월 (추후 단위학교 신청 공문 시행)
- 대상 : 신청교 교원 및 학부모 대상
- 일시 및 장소 : 신청교 희망 일시 및 지정 장소
- 경기도교육청에서 연수강사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

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완 및 단위학교 보급

- 수록내용 : ① 교육활동 침해 행위 개념, 유형, 대응절차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③ 교육활동 보호 관련 질의응답
④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내용 및 관련 법령 소개
⑤ 기타 참고 양식
- 보급일시 및 방법 : 2019년 상반기 (단위학교에 pdf파일로 제공)

라. [교권 및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 자료명 :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 만들기
- 자료 개발 목적 :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받는 학교 문화 풍토 조성의 내용을 제작하여 경기지역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소개
- 저작권 등 일반사항 : 결과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경기도교육청에 있음
- 개발위원 : 교권담당 장학관, 장학사,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교원, 인권정책연구소 연구진, 학부모위원, 학생참여위원회 대표학생 등
- 자료 개발 및 보급 : 2019년 2월부터 자료개발, 상반기 보급 예정 (단위학교 공문 시행)

마. 분쟁조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수 운영

- 목적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비롯하여 학교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 상황이 발생함
 - 분쟁 조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함께 실천 가능한 분쟁 조정 방법을 배우고 익힘
 - 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 교감, 상담교사, 교권업무 담당부장 등 연수 개설시 추후 안내
 - 주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 내용(예시)
 - 회복적 정의와 갈등 전환
 - 갈등분석 및 의사소통 기법 실습
 - 1:1 대화, 2:1 대화 실습
- ※ 프로그램 연수 대상 및 연수 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

바.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운영

- 보험종류 : 교원배상책임보험
- 계약기간 : 보험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예정)2019. 3. 1.(00:00) ~ 2020. 02. 29.(24:00)
- 가입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휴직자 제외, 기간제교사 포함)
- 보상범위
 - 인격침해 포함 법률상 배상 사고당 최고 2억원까지 보상
 - 연간 총 10억원까지 보상
- 보상내용

-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포함)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 배상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애 따른 모든 비용
- 손해배상 청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피해교원 치유 지원

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심리치료 지원

- 지원목적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심리치료를 통한 회복탄력성 증진
- 지원한도 : 1인당 8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중 상시(대상자로 선정된 후 월 기준으로부터 1년)
- 지원내용 : 심리치료, 심리검사 및 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일반진료 미포함)
- 대상자 선정 : 신청교원 중 심의·선정
 - 1순위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심리치료 보호조치가 필요한 교원
 - 2순위 : 교육활동 중 교육자로서의 지위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 발생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교원(예산 소진 시 1순위 우선지원)
- 지원 절차

학 교	교 원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침해사안 신고 접수	교원침해사안 신고 및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문의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한 안내
평가 중인 교사에 한하여 담당자 대리 신청 가능 (신청서 대리 작성 불가)	* 신청서 접수 신청서[붙임1]을 작성하여 공문(비공개, 6호)으로 신청 * 교원보호위원회 개최와 별도	* 대상자 선정 절차 전 지원이 필요한 교원은 전화상담 후 지원안내
		매일 협의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및 개별통보(메일 등)
평가 등 복무 조치 * 학교장제량 공무상평가 6일 교원침해피해교원특별휴가 5일	* 기관 선택 및 상담·치료 진행 · 희망기관 : 피해교원 접근성 편리한 기관 선택, 진행 · 협력기관 : 연계상담 후 진행	협력기관 안내 및 연계상담
	협력기관, 개인이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메일 청구	상담 및 치료비 지급

- 신청방법 및 양식 : [붙임1] 참고

나. 교원행복치유캠프 운영

- 목적
 - 교원 침해 피해 교원의 자존감 및 심신의 안정 회복
 - 교직원 심리적 소진의 효율적 치유 및 회복 탄력성 증진
- 운영기간: 2019년 연 2~4회 예정
- 지원대상: 초·중·고 교원침해 교원 중 희망자
- 운영 내용(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명	내용	비고
교원 행복 치유 캠프	○ 교육환경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의 해소와 교원의 회복탄력성 증진	1회 30명 내외
	○ 1박2일 또는 2박3일 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걷기명상 - 독서명상 - 향기명상 - 명사특강 - 통나무명상 - 춤명상 춤치유 - 템플스테이 명상 - 호흡명상, 웃음명상, 소리명상 등 자기이해·타인수용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 운영 장소 : 깊은산속옹달샘, 힐리언스선마을, 템플스테이기관, 진관사, 조선왕가 등 (입찰 후 선정)

다. 교원치유프로젝트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목적
 -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의 자존감 및 심신의 안정 회복
 - 교직원 심리적 소진의 효율적 치유 및 회복 탄력성 증진
- 운영기간: 2019년 연 2~4회 예정
- 지원대상: 초·중·고 교권침해 교원 중 희망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겪은 교사 우선 지원)
- 운영 내용(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명	내용	비고
교원치유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트라우마 회복 및 심리적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 자가 치유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여 학교장면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한 대응능력 함양 ○ 매주 5회기로 구성하여 진행 	1회 15명 내외
[자기돌봄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 내면가족체계치료(IFS)의 개념과 실제 - 2회 : 분야들의 활동, 활성화 경험 - 3회 : 분야들의 소통을 통한 돌봄 - 4회 : 교권침해 트라우마 치유 및 대응법 - 5회 : 교육현장에서의 IFS적용 	

4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가.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2

나.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 법적 지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기구
- 조직 구성(3기, 2017.5~2019.5.) :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경기도의회	의원	조○○	비상근
경기도의회	의원	송○○	비상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조○○	상근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장	원○○	상근
○○대학교	교수	옥○○	비상근
○○초등학교	교장	이○○	비상근
○○중학교	학부모	조○○	비상근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변○○	상근
경기북부경찰청	경위	이○○	비상근

다.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기능
 - 교육감이 수립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시책 심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회의 소집
 -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수립하는 시책을 심의하는 경우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운동 전개

가. 동료교사를 기반으로 한 **지지그룹** 만들기

- 교육활동 침해 경험을 공동체 안에서 적극 드러내고 협의하는 분위
기 형성
- 교감 대상의 교권보호 연수시, 동료교사를 기반으로 하는 교사 안전
망(지지그룹) 만들기를 적극 권장

나. **학부모와 연대**하기

- 학부모 교육을 통한 교권보호노력
 - 학부모 총회, 학부모 연수자료를 활용하여 근무시간외 교사에게 개
인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청, 긴급한 상황의 경우
학부모가 연락할 수 있는 학교 대표번호 안내
 - 학년 초 담임교사의 가정통신문 : 담임교사의 재량에 따라, 수업시
간표 안내 및 효율적인 소통 방법을 안내(방문상담 예약, 문자소통
및 메일 활용 등)
 - 학교에 건의할 내용이 있는 경우 건의방법 및 절차 안내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 위원들의 전문성 및 분쟁조정역의 역할 강화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예방 활동 계획하고 추진

라. **학생자치회와 연대**하기

- 「학생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해 학생
자치위원들과 협의 진행, 자발적인 캠페인 활동 추진

6 특별교육 기관 지정 운영

가. 시기: 2019. 3월 ~ 2020. 2월

나. 대상: 교권침해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선도조치한 학생과 그의 학부모

다. 운영방법

- 회기별 10명 내외로 인원 편성
- 심성수련, 게임 및 집단상담, 노작활동,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라. 위탁기관: 25개 교육지원청 Wee센터

7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가. 목적: 교권침해 발생 시 조기 대응 및 피해 최소화

나. 방침: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법원, 경찰, 검찰,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

다. 유관기관별 협조사항

● 교육관련기관

-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교권보호 관련 법률 자문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관련 교권침해사안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및
법률지원
- 맞춤형복지 교직원단체보험(복지법무담당관): 단체보험 가입교원 치료비 지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 및 공무상
요양비 등 지급
- 교원단체: 교권침해사안 상담 및 지원

● 유관기관

- 경찰·검찰
 -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접수·수사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
 - 교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시 교원 신상 외부 공개 금지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교원의 명예·편의를 고려한 수사
- 법원: 교권침해 사안의 사법 처리 시 교권보호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
- 의료기관: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치료
- 상담기관: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 지원
- 언론기관: 교육활동, 교원에 대한 언론 보도 시 교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교권존중 풍토 조성에 노력

VII 기대 효과

- 교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및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교권 확립
-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 스승존경 풍토 조성 및 교권강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붙임]

1. 심리치료 지원 신청서
2.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상담 협력기관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양식(7가지 양식 첨부)
4.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5.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양식(7가지 양식 첨부)

[붙임] 심리치료 지원 신청서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신청서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해 다음 내용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아래 빈칸 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십시오. 모든 정보는 비밀을 유지합니다.

신청자	(성명)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현 소 속	_____교육지원청 _____학교 담당(학년 반)/교과전담(과목) 담당업무: _____	생년월일	년 월 일
		현 주 소	
		* 연락처	010 - -
		* E-mail	(자주 확인하는 메일)
교권업무 담당자	(성명)	교권업무 담당자 전 화	010 - - 031 - -
교권활동 기구 보호조치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심의예정 <input type="checkbox"/> 심의(2019. . .) <input type="checkbox"/> 개최하지 않음 • 선두위원회 <input type="checkbox"/> 개최예정 <input type="checkbox"/> 심의(2019. . .) <input type="checkbox"/> 개최하지 않음		
원하는 기 관	• 협력기관(공문참조):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상담센터 • 희망기관: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상담센터		
근무상황	<input type="checkbox"/> 근무 중 <input type="checkbox"/> 병가 중(기간 2019. . ~ 2019. .) <input type="checkbox"/> 병가 예정(예상기간 2019. . ~ 2019. .)		
신청사유 (심의기준)	* 교권침해 내용과 신청사유를 일시, 장소, 정황, 상대방, 침해행위 등 핵심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폭언을 하였다, 폭행을 하였다, 모욕적인을 말을 하였다 등의 일반적인 표현 대신 '○○○' 라고 욕설을 하였음,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음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 적시 ※ 사유작성 시, 가해자(학생·학부모 등) 이름 기재 불필요		

구분	지원청	기관명	연락처	
요 권	의정부	한서중앙병원	031-875-7878	
	의정부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1661-7500	
	의정부	서울정신과의원	031-853-5348	
	의정부	이안심리상담의정부센터(2019신규)	031-863-3533	
	포천	우리심리상담센터	031-541-0954	
	포천	미래인지발달교육센터	031-542-5230	
	포천	새마음의원	031-535-6889	
	포천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532-1655	
서 권	군포의왕	마음자리정신과의원	031-343-3690	
	군포의왕	휴엔락정신과	031-399-6993	
	군포의왕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1899-3992	
	수원	아주심리상담센터(2019 신규)	031-219-1721,8	
	수원	연세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수원]	031-268-8400	
	수원	행복한우리동네의원	031-217-6336	
	수원	수원시자살예방센터	031-247-3279	
	안산	휴앤아이	031-410-2712	
	안산	윤정신과의원	031-402-7575	
	안산	안산시자살예방센터	031-418-0123	
	안양과천	희망가득의원	031-386-5775	
	안양과천	삼성해밀정신과의원	031-387-5131	
	안양과천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469-2989	
	안양과천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2-504-4440	
	화성오산	메타메디병원	031-8003-5800	
	화성오산	해솔정신건강의학과의원	031-8003-7578	
	화성오산	웰빙아동심리발달클리닉	031-373-7595	
	화성오산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369-2892	
	매 권	평택	평택대학교피어션심리상담원	031-659-8201
		평택	백성의료재단 굿모닝병원	031-5182-7700

구분	지원청	기관명	연락처
요 권	평택	밝은연세정신건강의학과의원	031-651-3975
	광주하남	심리상담센터 어바웃미(about-me)	070-8272-9974
	광주하남	성모정신과의원	031-763-2301
	광주하남	마리정신과의원	031-793-2080
	성남	맑은샘심리상담연구소(분당)	031-702-1897
	성남	연세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분당)	031-781-8620
	안성	하나정신건강의학과의원	031-671-0075
	안성	안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031-678-5360
	여주	삼성신경정신과의원	031-885-8857
	용인	다솜힐링심리상담센터(2019 신규)	031-211-3000
	용인	이음병원	031-212-1500
	용인	용인정신병원	031-288-0114
	용인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286-0949
	이천	하은정신건강의학과의원	031-638-8202
이천	성안드레아병원	031-639-3700	
기타	서울	홍익심리상담연구소 홍익심리상담센터	02-3142-7425
	서울	맑은샘심리상담연구소(서울)	02-385-6494
	서울	이안심리상담노원센터(2019 신규)	02-932-3533

[붙임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양식(7가지 양식 첨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주소			
연락처	근무처		E-mail
	주택		휴대전화
위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학교장 귀하

<h1>위촉장</h1> <p>소속:</p> <p>성명:</p> <p>귀하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p> <p>20 년 월 일</p> <p>○○○학교장</p>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정 신청서

청구인 인적사항			피청구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구분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연락처		
심의(조정) 요청 내용					
증빙자료		당사자 진술서 등			
위의 내용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소속 직 성명 (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양식임

관련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 진술서

소속, 직	
성명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요지를 적고, 필요한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	
년 월 일	
(청구인, 피청구인) : (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연락처		직(신분)	
	주 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출석 장소				
유의 사항		※ 진술을 위한 출석을 하지 않고 관련당사자 진술서(서면진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전일 12시까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합니다.		
<p>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절취선)

교권보호위원회 진술권 포기서

인 적 사 항	성명		소속	
	연락처		직위(급)	
	주 소			
<p>위의 출석통지에 대해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인)</p> <p>○○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p>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 년 월 일 요일 시 분		
장 소			
위원정수 :	명	참석위원 :	명 불참위원 : 명
○ 회 순			
<p>1. 개회</p> <p>2. 위원회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p> <p>3. 사안 내용 보고(간사)</p> <p>4. 당사자 진술(피해 교사 및 학생, 학부모 진술 등)</p> <p>5. 질의응답 6. 안전심의 7. 의결 8. 폐회</p>			
○ 심의 안건			
<p>1.</p> <p>2.</p>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조정 결과 통보서

청구인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직(신분)
피청구인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직(신분)
조정 일자			
조정 결과			
<p>위와 같이 학교교권보호심의위원회 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붙임4]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해 경기도교육감 관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3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42장(손괴의 죄),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등 행위
 - 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바.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관련 당사자”란 교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해당 학교의 교원 및 교육활동 침해 분쟁이 있는 상대방(학생, 학부모, 보호자 등)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이하 ‘심의 등’이라고 한다.)한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교권 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기도 의회 의원(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경기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경기도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8. 그 밖에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신분 변동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소속공무원은 직무담당자가 이를 승계하고 민간인이나 타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결원 인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교육감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1. 부위원장
2. 위원장,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제7조(심의 등 원칙 등)

-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피해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분쟁이 원만하게 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입증자료 및 관련 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등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소집)

-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수립하는 시책을 심의 신청하는 경우
 2. 제3조제2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교육감은 제3조 제1호 및 제3호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
- ③ 제3조 제2호의 분쟁조정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신청서
 2. 교권분쟁 사안 조사 보고서
 3. 교권분쟁 관련당사자 진술서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④ 위 ③항의 청구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 위 ③항의 청구 시 각 호의 자료가 미비할 경우 담당부서는 학교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심의 등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등을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위 ③항의 청구 사안이 접수되었을 당시에 소송·행정심판·수사·감사·조사(국가인권위원회·아동보호전문기관) 중이거나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 및 이미 종료된 사건인 경우 심의 등에서 제외 한다.

제9조(출석 및 의견청취)

- ① 위원회는 관련 당사자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되,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가 주소불명, 인적사항 제공거부,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당사자의 소속 기관장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관련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심의 등할 수 있다.

제10조(제척, 기피 및 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 당사자의 친족이나 심의 등 사안과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 등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② 관련 당사자가 위원회의 특정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특정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척이나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의 작성)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들은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2조 (심의 등 결과 조치)

- ① 위원회가 심의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해당학교 및 관련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교권보호처리대장)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5]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양식(7가지 양식 첨부)

[서식1-1]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조정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접수자					
청구인 인적사항	성명	○○○	소속교	00교	직위	교사
	휴대전화	000-0000-0000			재직경력	5년6월
피청구인 인적사항 <small>(휴대전화, 주소 정보 비공개 요청 시 빈칸)</small>	성명	○○○	소속교	00교	신분	학생 (학부모)
	성별	여, 남	휴대전화	000-0000-0000	피해교원과 의 관계	담임, 교과담당 교사 등
	주 소	경기도 ○○시 ○○구 ○○로 100(100동 100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일자	2019년 ○월 ○일	심의 결과	(예시) 분쟁조정 불성립,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안으로 규정(명예훼손, 모욕)		
조정 요청 내용	(예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학부모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한 번 분쟁 조정을 요청하고자 함.					
증빙 제출자료	[서식1-2] 교권분쟁 사안 조사 보고서, [서식1-3] 교권분쟁 관련당사자 진술서 (청구인/피청구인 각 1부), 학교교권보호위원회회의록 파일, 기타 참고자료					
<p>위와 같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 월 ○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 ○ ○) (서명 또는 날인) (※ 피해교원 또는 업무담당자 작성 가능)</p> <p>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p>						

※ 신청 내용 :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신청

[서식1-2]

교권분쟁 사안 조사 보고서

청구인(교원)	성명	○○○	직위	교사	성별	남/여
피청구인(학생 또는 보호자 등)	성명	○○○	교원과 관계	학부모(학생, 보호자 등)	성별	남/여
사안제목	(예시)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안					
사안발생일시	(예시) 2019년 ○월 ○일, 10시경					
사안발생장소	(예시) ○○초등학교 ○학년부 교무실					
사안내용	<p>(예시) 시간 순서대로 간략하게 기재</p> <p>1. 2019년 0월 0일 10시경, 000학생의 어머니가 내교함. ○학년 교무실에서 담임 및 학년부장과 상담(0000이란 모욕적인 표현을 계속 사용함)</p> <p>2. 2019년 0월 0일 오후2시경, 000학생의 어머니가 내교함. 교장실에서 이야기하던 중, 교장실 책상의 유리를 부수고 담임교사의 목살을 잡고 항의함.</p> <p>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0월 0일 개최하기로 협의하고, 이후 절차대로 진행함.</p>					
학교조치내용	<p>1. 피해교원 보호조치 -공무상 병가 2일(학교장 허가)</p> <p>2. 가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 -서면사과 권고</p>					
<p>위와 같이 교권 분쟁 사안에 대하여 조사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 월 ○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학교 학교장 (직인)</p> <p>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p>						

[서식1-3] ※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진술이 각각 필요합니다.

교권분쟁 관련당사자 진술서(청구인/피청구인)

성명	000	소속	00교	직위 (신분)	교사	연락처	000-0000-0000
사안 진술	누가	000(관련자 모두 기재)					
	언제	20 년 ____ 월 ____ 일 ____ 시경					
	어디서	구체적으로 작성(예: 00학교 1-3반 교실) 학년 교무실에서 담임 및 학년부장과 상담하던 중 발생(고성 및 폭언, 모욕, 비하발언 등)					
	무엇을 /어떻게/ 왜	(상황등 자세히 기록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					
20 년 ○ 월 ○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2]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

인 적 사 항	성명		소속교	
	연락처		직위(급)	
	주 소			
출석 이유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조정 참석 (해당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정불성립에 대한 재조정을 위하여)			
출석 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출석 장소				
유의 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십시오.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3.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서, 진술권포기서 또는 서면 진술서 등 제출 등 의견진술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절취선)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진술권 포기서

인 적 사 항	성명		소속교	
	연락처		직위(급)	
	주 소	□□□-□□□		
위 위원회의 출석통지에 의하여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				
성명 (인)				

※ 진술권 포기서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

※ 진술권 포기서 제출처 :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Fax)031-821-1079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조정에 대한 안내】

1.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는 각급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관련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조정되지 않았을 때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다시 조정의 기회를 갖는 절차입니다.
2.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두 들은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 및 화해를 진행합니다.
3.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는 청구된 사안이 소송·행정심판·수사·감사·조사(국가인권위원회·아동보호전문기관) 중 이거나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 및 이미 종료된 사건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내용 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관련 당사자에 대한 권고일 뿐 처분이 아니며 강제력이 없습니다.

[서식3]

교권보호위원회 조정 결정서

사건번호	-
사건명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소속교	직 위(급)
피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소속교	청구인과의 관계
			(예) 학생, 보호자 등
조정 결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임] 회의록 1부

20 교 권 보호 위원 회 처 리 대 장

경기도교육청

접수 번호	신청서 접수일	조정 일자	결과 통보일	청구인(교원) 인적사항			피청구인 인적사항			사안내용	조정 결과
				소속교	직위	성명	구분	성명	교원과의 관계		
20 - 1										○ ○	○ ○
20 - 2										○ ○	○ ○
20 - 3										○ ○	○ ○
20 - 4										○ ○	○ ○
20 - 5										○ ○	○ ○
20 - 6										○ ○	○ ○
20 - 7										○ ○	○ ○

- ※ 사안 내용에는 사안 발생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작성
- ※ 피청구인 인적사항 구분 란에는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 등으로 기입
- ※ 결과 통보일은 해당학교에 통보한 날